증평군 Jeung Pyeong

www.jp.go.kr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568호 2019년 10월 25일(금)

조 례

○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02
○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03
○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07
○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0
○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규 칙

○ 증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 23
○ 증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24
○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28

고 시

○ 증평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34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36

공 고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공고----------38

회 람									

발행 : 증평군 편집 : 문화체육과 (☎835-4132,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91호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9명”을 “11명”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92호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 보전”을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출기관”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종전의 제1호) 중 “대출기관”을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서식]

소상공인 보조금(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지		휴대전화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주소		전 화 번 호	

융 자 금 대 출 현 황	대출일자: 년 월 일
	취급은행:
	융 자 금: 원
	대출기간: 년
	대출금리: 연 %
	보조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내역서 또는 영수증 2. 정책자금의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최초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후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보조금(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최소 필수사항)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보조금 (이차보전금)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융자금 대출 현황(대출일, 취급은행, 융자금, 대출기간, 대출금리, 계좌번호), 이자납부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조금(이차보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

증평군수 귀하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93호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8조의2,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94호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

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 (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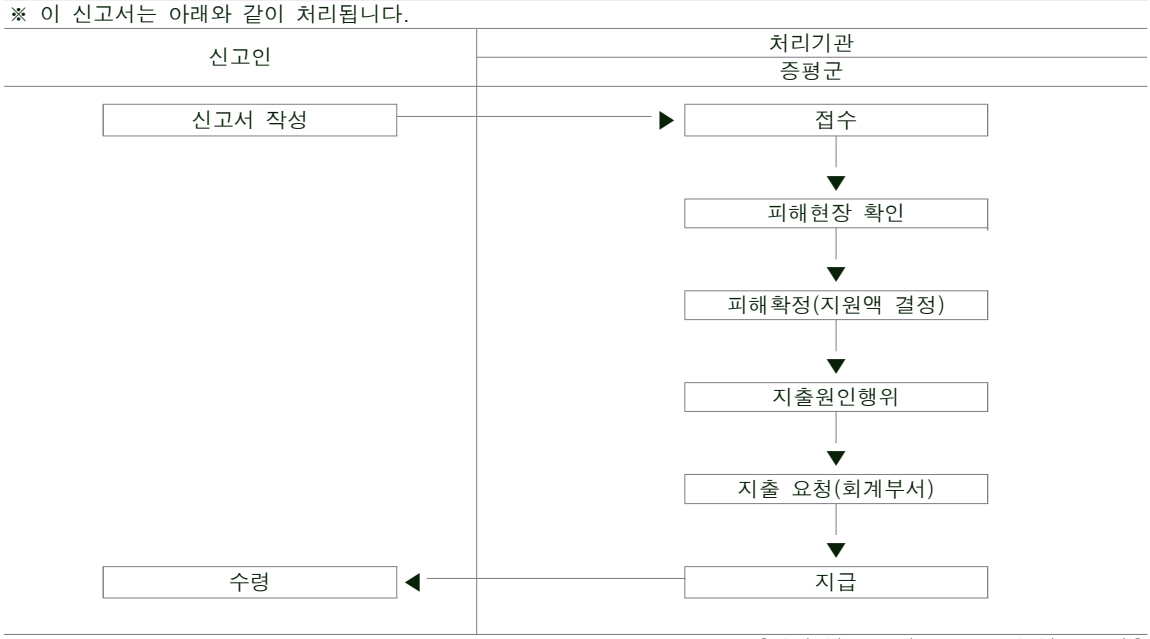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95호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가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외대상 업종)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

종은 주로 차, 아이스크림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재활용하여야 한다”를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
2. 전용수거용기 지급
3. 종량제 봉투 지급
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물품의 제작·지원 등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를 “「증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을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를"로,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을 "처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신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필증(칩)을 붙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칩)의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납부필증(칩) 공급 및 판매금액(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전용수거용기 용량	공급금액	판매금액	비 고
업소용	20ℓ	640	700	
	60ℓ	1,930	2,110	
	120ℓ	3,860	4,220	

주) 1. “업소”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급금액이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증평군이 공급하는 납부필증의 가격을 말하고, 판매금액이란 판매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하는 납부필증의 가격을 말한다.

증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364호

증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증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365호

증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증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증평군 보건소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3. 괴산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1388청소년지원단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및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과장
8.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10. 청소년 문제 또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1. 학부모 대표
12.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2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회의 및 실행위원회의에 참석 또는 출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366호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고령운전자 지원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고령운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제4조(대장의 작성)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수령자 인적사항,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령운전자 보호표지(제2조 관련)

□ 차량 부착 용

1. 전면 부착용: 가로 40CM × 세로 15CM
2. 후면 부착용: 가로 40CM × 세로 20CM



주) 주·야간 모두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재질로 제작

［별지 제1호서식］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증평군		
	집 전 화		휴대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일	20 년 월 일		

본인은 증평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아래의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 증평군 실거주 주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인 사람
-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붙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증평군이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대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자격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사업목적 달성 또는 사업유효기간 내	증평군

※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인이 불가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역상품권 등 지급 대장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방법/ 지급일자	수령자(자필) 서 명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관리대장

(단위: 매 / 원)

연 번	구 분 (상품권등)	구 입			지 급			잔 고	
		구입일	구입수량	구입금액	지급일	지급수량	지급금액	잔 량	잔 액
월 계									
누 계									

※ “구분”란에는 현금, 지역상품권, 물품 등 구체적으로 기재

증평군 고시 제2019 - 91호

증평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증평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1. 고 시 일 : 2019. 10. 25.

2. 고시방법 : 군보 및 증평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증평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의견수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시장 등 직권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변경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8항에 의거 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서면동의 생략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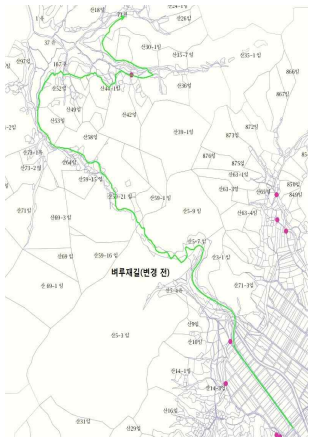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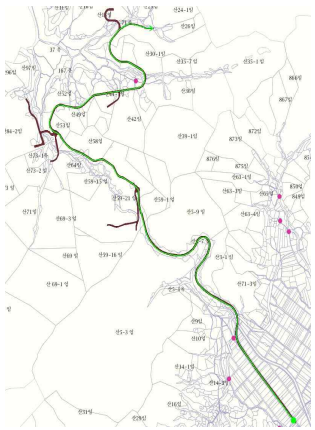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35-3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붙임1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순번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기초간격(m)	기초번호		부여 사유	관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1	변경 전	벼루재길 (주도로구간)	노암리 93	연촌리 71	도면 참조	6,130	3	20	1	614	노암리에서 연촌리 사이의 고개에서 유래	도안면
	변경 후	벨포레길 (주도로구간)	노암리 93	연촌리 83	도면 참조	5,637	8	20	1	566	관광단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기업명(블랙스톤 벨포레) 반영	

현황도면(변경 전)		현황도면(변경 후)	
시스템	위성사진	시스템	위성사진
			

증평군 고시 제2019 - 92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벼루재길”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수

☐ **도로명주소의 변경(고시)일 : 2019. 10. 25.**

☐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 도로명 “벼루재길”을 “벨포레길”로 변경**

☐ **도로명 변경 고시일 : 2019. 10. 25.**

☐ **도로명 부여 사유 : 관광단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기업명(블랙스톤 벨포레) 반영**

☐ **종전의 주소 및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 10건**

연번	종전 주소	새로운 도로명주소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민원과(☎835-3453)에 문의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연번	종전 주소	새로운 도로명 주소	주소사용자
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6	연*완
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2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22	연*철
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7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73	정*춘
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28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49	㈜블랙****
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33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46	㈜블랙****
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359-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65	㈜블랙****
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38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67	㈜블랙****
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45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408	㈜블랙****
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49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44	㈜블랙****
1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60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535	김*진

증평군 공고 제2019-740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긴모랭이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증 평 군

소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긴모랭이천	긴모랭이 소하천 정비사업	증평읍 미암리 산25-4	증평읍 미암리 977-49	1,233	1,233	교량 9개소	2019.10.	2021.12.	재해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재

<긴모랭이소하천 정비사업 세부 정비시행계획>

1. 소하천 정비사업의 명칭 : 긴모랭이소하천 정비사업

2. 소하천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소하천 전 구간이 노후 석축으로 되어있으며, 소하천의 하폭 및 통수단면 부족, 여유고 부족으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 시 인명피해 및 농경지침수에 의한 재산피해가 높아 충분한 하폭과 여유고를 확보하는 등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나. 개 요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산25-4번지 ~ 977-49번지

○ 사업량 : 소하천정비 L=1.233km

○ 사업비 : 3,200백만원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증평군수

○ 주 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4.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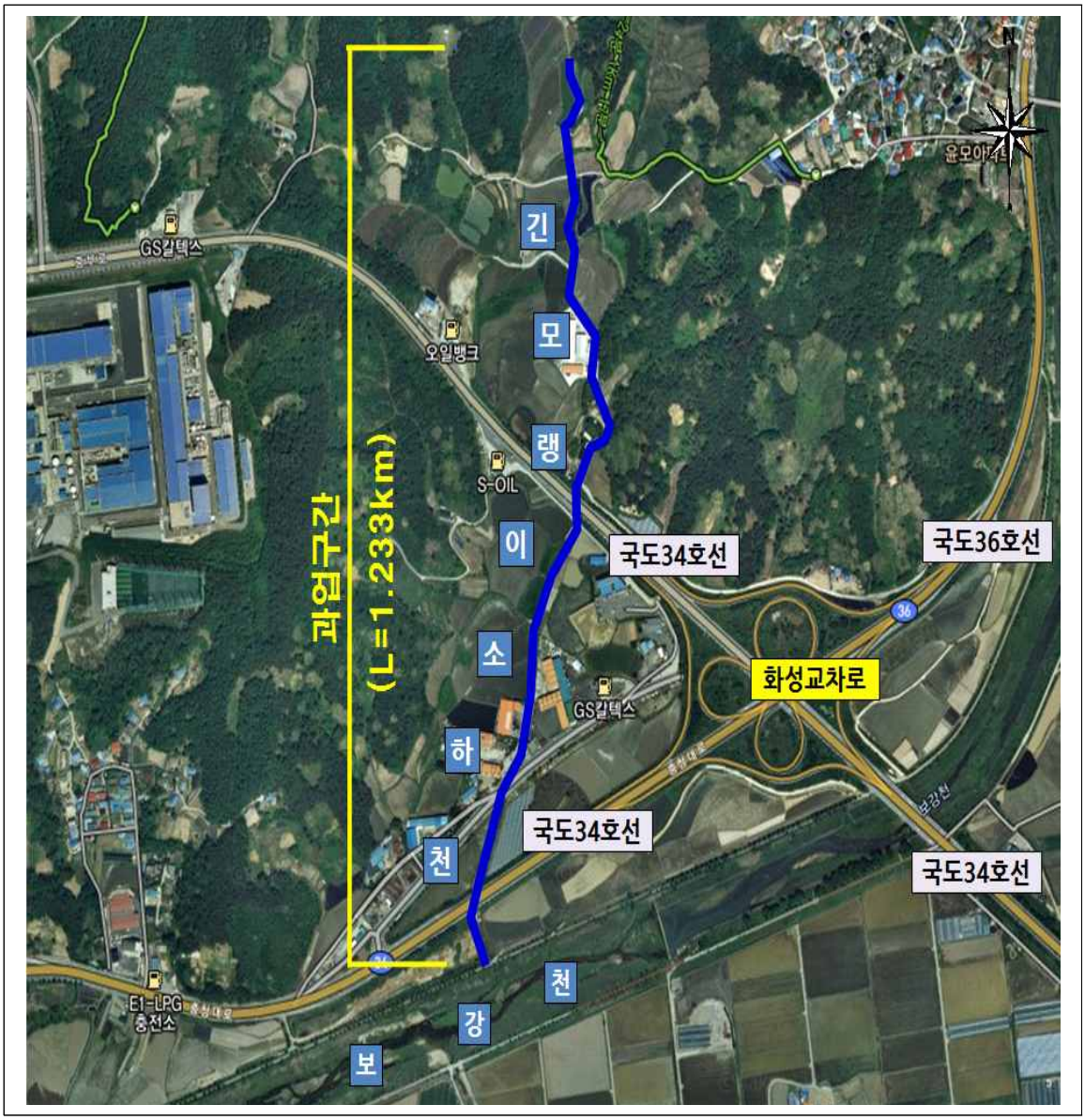
○ 2019. 10. ~ 2021. 12.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조서 참조(60필지, 16,791㎡)

6.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 시행청 비치(증평군청 안전총괄과)



7. 실시설계도서
   ○ 시행청 비치(증평군청 안전총괄과)

8. 예정 공정표
   ○ 시행청 비치(증평군청 안전총괄과)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3,200	320	1,550	1,330	

10.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증평군수(안전총괄과장)

11.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 해당없음

12. 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시행청 비치(증평군청 안전총괄과)

13.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시행청 비치(증평군청 안전총괄과)

14. 기타사항
   ○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청 안전총괄과(☎ 043-835-47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군계획시설(긴모랭이소하천) 결정내용

1) 군계획시설(하천)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 설	9	하천	소하천 (긴모랭이천)	증평읍 미암리 산25-4	증평읍 미암리 977-49	-	1.233	3~5	16,791		

2) 군계획시설(하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하천	○ 신설 - 연장 : 1.233km - 폭원 : 3~5m - 면적 : 16,791㎡	○ 『소하천 정비법』 제3조의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항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군계획시설(하천)결정

(3) 군계획시설(하천) 실시계획인가 내용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 정	9	하천	소하천 (긴모랭이천)	증평읍 미암리 산25-4	증평읍 미암리 977-49	-	1.233	3~5	16,791		
시 행	9	하천	소하천 (긴모랭이천)	증평읍 미암리 산25-4	증평읍 미암리 977-49	-	1.233	3~5	16,791		

□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지적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계				45	45		310,367	11,809					
1	증평	증평	미암	산25-3	산25-4	임	10,040	16	1/4	박*진	제천시 서부동 ***		
									1/4	박*원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주공아파트 ***-***		
									1/4	박*종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 주공아파트 ***-***		
									1/4	박*명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		
2	증평	증평	미암	산25-3	산25-5	임	10,040	56	1/4	박*진	제천시 서부동 ***		
									1/4	박*원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주공아파트 ***-***		
									1/4	박*종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 주공아파트 ***-***		
									1/4	박*명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		
3	증평	증평	미암	81	81-1	전	1,759	60	1/1	연*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내수****조합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4	증평	증평	미암	81	81-2	전	1,759	58	1/1	연*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내수****조합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5	증평	증평	미암	980-1	980-7	구	24,842	5,10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6	증평	증평	미암	980-1	980-8	구	24,842	39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7	증평	증평	미암	980-1	980-9	구	24,842	96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증평	증평	미암	980-1	980-19	구	24,842	2,682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9	증평	증평	미암	980-1	980-24	구	24,842	164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지적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증평	증평	미암	101	101-1	답	565	40	1/1	연*훈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청수동, 경남아너스빌@)				
11	증평	증평	미암	987	987-1	도	234	17	1/1	국	국토교통부				
12	증평	증평	미암	100	100-1	답	2,648	5	1/1	연*신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13	증평	증평	미암	100	100-2	답	2,648	2	1/1	연*신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14	증평	증평	미암	84-2	84-4	전	2,116	10	1/1	연*성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 ***-****(목동, 목양마을@)				
15	증평	증평	미암	84-2	84-5	전	2,116	122	1/1	연*성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 ***-****(목동, 목양마을@)				
16	증평	증평	미암	95	95-1	답	909	37	1/1	연*신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17	증평	증평	미암	95	95-2	답	909	7	1/1	연*신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18	증평	증평	미암	94	94-1	답	60	38	1/1	연*섭	-				
19	증평	증평	미암	86-1	86-3	답	1,415	13	1/1	연*홍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3길 **				
20	증평	증평	미암	92	92-1	답	2,367	204	1/1	연*웅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21	증평	증평	미암	91-2	91-2	답	131	131	1/1	플래티넘**** 맥주주식회사	증평군 증평읍 울어바위길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근저당권	
22	증평	증평	미암	88	88-1	장	4,884	30	1/1	플래티넘**** 맥주주식회사	증평군 증평읍 울어바위길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근저당권	
23	증평	증평	미암	88	88-2	장	4,884	38	1/1	플래티넘**** 맥주주식회사	증평군 증평읍 울어바위길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근저당권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지적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4	증평	증평	미암	산19	산19-1	임	5,950	72	1/2	연*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길 **, ***-***(중계동, 금호타운)		
									1/2	연*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가길 **-*, *층		
25	증평	증평	미암	991	991-1	도	552	23	1/1	국	국토교통부		
26	증평	증평	미암	산17	산17	임	6,744	59	1/3	연*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목동, 목동현대*****)		
									1/3	연*병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번길 **		
									1/3	연*태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 ***-****(복대동, 신영지웰****@)		
27	증평	증평	미암	산14-4	산14-4	임	13,884	423	1/3	연*규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		
									1/3	연*중	증평군 증평읍 초중6길 *, ***-***(한라비발디@)		
									1/3	연*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반포자이@)		
28	증평	증평	미암	134	134-1	답	2,360	169	1/5	김*행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		
									1/5	김*두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		
									1/5	김*용	포항시 남구 효자동 ***-* 승리아파트 **-***		
									1/5	김*식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		
									1/5	김*식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번길 **		
29	증평	증평	미암	157	157-2	전	1,851	271	1/1	연*호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용암동, 중흥마을부영@)	**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지적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증평	증평	미암	145	145-2	답	124	46	1/5	김*행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				
									1/5	김*두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				
									1/5	김*용	포항시 남구 효자동 ***-* 승리아파트 **-***				
									1/5	김*하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문촌마을 ***-***				
									1/5	김*식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번길 **				
31	증평	증평	미암	991	991-2	도	552	423	1/1	국	국토교통부				
32	증평	증평	미암	156	156-3	답	2,314	153	1/1	연*철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				
33	증평	증평	미암	161	161-2	답	1,316	12	1/1	우*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삼보로얄맨션 ****호				
34	증평	증평	미암	163	163-2	답	1,813	9	1/1	연*숙	서울 강동구 성내동 ***				
35	증평	증평	미암	155-1	155-3	전	1,415	713	1/1	조*자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 삼성아파트 *-****				
36	증평	증평	미암	155-2	155-4	답	701	108	1/1	조*자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 삼성아파트 *-****				
37	증평	증평	미암	986	986-3	도	8,334	229	1/1	국	국토교통부				
38	증평	증평	미암	165	165-1	전	813	79	1/1	연*학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				
39	증평	증평	미암	179-2	179-3	답	823	241	1/1	김*선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				
40	증평	증평	미암	177-1	177-3	답	2,063	62	1/1	김*자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				
41	증평	증평	미암	986	986-2	도	8,334	66	1/1	국	국토교통부				
42	증평	증평	미암	228-2	228-8	철	275	33	1/1	박*식	증평군 증평읍 하평로 **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지적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3	증평	증평	미암	228-6	228-10	전	101	73	1/1	국	기획재정부		
44	증평	증평	미암	228-3	228-9	전	951	406	1/1	연*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천우@ *-***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증평군지부)
45	증평	증평	미암	237-8	237-14	전	135	6	1/1	국	기획재정부		
46	증평	증평	미암	237-3	237-12	전	715	10	1/1	연*탁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	증평****조합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
47	증평	증평	미암	980-4	980-26	구	1,290	1,110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48	증평	증평	미암	229	229-2	전	2,611	417	1/4 1/4 1/4 1/4	연*성 연*옥 연*철 연*순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 우림필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49	증평	증평	미암	231-2	231-6	답	1,895	56	1/2 1/2	신*열 이*용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 현대대우@ ***-*** 증평군 증평읍 진지내4길 **, *-***(대성연립)		
50	증평	증평	미암	980-6	980-27	구	1,609	847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증평	증평	미암	233	233-1	답	602	110	1/1	연*희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		
52	증평	증평	미암	243-1	243-10	답	4,619	27	1/1	김*숙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		
53	증평	증평	미암	977-27	977-59	전	1,266	254	1/1	충청북도	충청북도		
54	증평	증평	미암	237-3	237-13	도	715	49	1/1	연*탁	증평군 도안면 남촌길 **		
55	증평	증평	미암	980-3	980-3	도	501	257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읍면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지적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6	증평	증평	미암	230	230	도	1,864	42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증평	증평	미암	229-1	229-1	도	923	164	1/1	국	국토교통부				
58	증평	증평	미암	980-5	980-5	구	815	553	1/1	국	국토교통부				
59	증평	증평	미암	237-10	237-10	도	309	38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60	증평	증평	미암	977-49	977-49	수	3,088	215	1/1	국	환경부				

□ 물건조서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군	읍면	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계					11							
1	증평	증평	미암	81-1	비닐하우스		8.93	㎡	연*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내수****조합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
2	증평	증평	미암	980-7	관정		3	개소				
					컨테이너		1	동				
					가로등		1	개소				
3	증평	증평	미암	991-1	컨테이너		1	동				
4	증평	증평	미암	134-1	컨테이너		1	동				
					비닐하우스		0.03	㎡				
					가건물(개집)		1	동				
5	증평	증평	미암	산14-4	가건물(화장실)		1	동				
6	증평	증평	미암	980-26	관정		1	개소				
7	증평	증평	미암	980-5	표지판		1	개소				